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	처리기간	<u>(앞쪽)</u> 7일		
	성명 (법인	 인 경우, 법인명 및	 대표자명)		생년월일			
승계를 하는 기	법인인 경우 자	2 법인등록번호						
	주소							
		(전화번호)						
	성명 (법인)	성명 (법인인 경우, 법인명 및 대표자명)			생년월일			
	버이이 겨오	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						
승계를 받는 기	자 변한한 영기	H 다 다 정 I H 다 이 그 건 보						
	주소					,		
		승계 전			(전화번호 승계 후			
영업소의 명칭(상	호)	O/II L'			6/ ∥ ⊤			
승계 사유 [] 양년		양수 [] 상	속 [] 합병	[] 기타()		
「야시버, 제	80조제3하 및 기	·은 법 시행규칙 제	50조제1하에 따라	의야 간이 시고?	할니다			
7/16] ///	00-1410-6 X E	L H MOHT M	33고세16세 떠디	THE EN CI	ㅂ기의. 년	월 일		
신고인:						 (서명 또는 인)		
			담당자					
				전화번호:				
	시상 •	군수 • 구청장	귀하					
	1. 허가증 1부							
		. 양도·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(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. 기업진단서(의약품 도매상의 양도·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		
신고인		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		
제출서류		.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						
	6. 지위를 승계	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「약사법」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						
		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						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공	인 등기사항증명서						
처리 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		접수	검토	→ 결제	→	통지		
시구인			처리	l과 : 시 ∙ 굿 • 구				

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

- 1.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「약사법」 제71조, 제72조,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, 제76조의 의2, 제79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,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(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)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.
 - 가.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

처분받은 날	행정처분 내용	행정처분 사유

나.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

적발일	위반내용	진행 중인 내용

- ※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"처분받은 날"란에 " 없음"이라고 적습니다.
- ※ 양도・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,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합니다.
- 2.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,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